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성준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08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6. 14.

발의자 : 박성준 · 박정 · 허종식
박상혁 · 박홍배 · 박희승
문대림 · 백혜련 · 박홍근
민병덕 · 이훈기 · 허영
노종면 · 김영진 · 안도걸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,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·중·고등학생인 경우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음.

그러나 교육비 중 학원비 등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, 초저출산 상황에서 학원비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음. 이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·중·고등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공제대상 교육비의 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하고, 초·중·고등학생을 위하여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교습비 등으로 지급한 교육비도 공제대상 교육비로 포함하려는 것임(안 제5

9조의4제3항제1호).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의4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“300만원”을 “500만원”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마. 초·중·고등학생을 위하여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교습비등으로 지급한 교육비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59조의4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 등이 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,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,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·중·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<u>300만원</u> 을 한도로 한다.	
가. ~ 라. (생 략)	500만원
<u><신 설></u>	--.
2. · 3. (생 략)	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
(4) ~ (11) (생 략)	마. 초 · 중 · 고등학생을 위하
	여 「학원의 설립 ·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교습비등으로 지급한 교육비]
	2. · 3. (현행과 같음)
	(4) ~ (11) (현행과 같음)